
학생 등의 선거운동·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

< 일러두기 >

- 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는 학생의 선거운동·정당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
- 교육청, 학교, 학생 등 대상 안내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I. 학생(18세)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례 Q&A	3
①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&A	3
(1) 투표할 수 있는 나이	3
(2) 선거운동이란?	3
(3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	3
(4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	4
(5) 말로 하는 선거운동	4
(6)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	4
(7)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	4
(8)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	5
(9)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	5
(10) 페이스북·트위터·유튜브·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	5
(11) 투표 인증샷 촬영 ①	5
(12) 투표 인증샷 촬영 ②	5
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&A	6
(1)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	6
(2)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	6
(3)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	6
(4) 현수막·배지를 사용하는 행위	6
(5)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	7
(6)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	7
(7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	7
(8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	7
(9)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	7
(10)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	8
(11) 정당·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	8
(12)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	8
(13)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	8
(14)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	8
(15)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	9
(16)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	9
(17)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	9

목 차

II. 학생(18세)의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한 사례 Q&A	9
(1) 입후보 가능한 선거와 나이	9
(2)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나이	10
(3) 예비후보자 등록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	10
(4) 입후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	10
(5) (예비)후보자의 후원회	10
III. 학생(16~18세)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사례 Q&A	11
(1)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	11
(2) 학생의 경선운동 ①	11
(3) 학생의 경선운동 ②	12
(4)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	12
(5)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	12
(6)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	12
IV. 교원 · 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	13
(1)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·반대	13
(2)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	13
(3)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	13
(4)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	13
(5) (예비)후보자 업적 홍보	14
(6)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	14
(7)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권유	14
(8)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	14
(9) 특정 정당의 지지·반대 행위	15
(10) 정당 등 지지도 조사	15
(11) 투표한 정당 조사	15
(12) 당원 가입·후원금 기부 권유 등	15
(13)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·토론회 개최	15
V. 정당 · 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	16
(1)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	16
(2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	16
(3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	16
(4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	16
(5)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	16

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&A

(1) 투표 할 수 있는 나이

Q	고등학교 3학년이면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?
A	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있으나, 2006년 4월 12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.

(2) 선거운동이란?

Q	신문에서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,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.
A	<p>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, 예를 들어 친구에게 000후보자(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,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.)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, 000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, 또는 000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.</p> <p>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, 홍보 인쇄물을 나눠 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키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(전화번호 : 1390)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
(3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

Q	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.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?
A	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,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4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

Q	선거운동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?
A	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,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4. 3. 28.(목) ~ 4. 9.(화)입니다.

(5) 말로 하는 선거운동

Q	이번 선거에서 000후보자를 지지하는데, 반 친구에게 000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가능한지요?
A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학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6)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

Q	000후보자의 선거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에게 000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정리해서 이번 선거 때 000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입니다.
A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(선거일 포함)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,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(7)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

Q	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000후보자를 위해 소품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?
A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규격은 길이 25cm, 너비 25cm, 높이 25cm 이내이어야 합니다.

(8)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

Q	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?
A	18세 이상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『공직선거법』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(9)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

Q	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'O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.'고 권유할 생각입니다.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?
A	18세 이상인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(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,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)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(10) 페이스북·트위터·유튜브·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

Q	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,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,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.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주소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체방에 올려도 되나요?
A	18세 이상인 학생은 페이스북, 트위터, 카카오톡,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(11) 투표 인증샷 촬영 ①

Q	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,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?
A	투표소 안에서 인증샷(엄지손가락, V자 표시 등)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(12) 투표 인증샷 촬영 ②

Q	(사전)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(퍼나르기)할 수 있나요?
A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(엄지손가락, V자 표시 등)을 촬영하여 카카오톡,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
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&A

(1)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

Q	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.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넘어갔는데,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,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?
A	친구에게는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니다.

(2)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

Q	평소 000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쉬는 시간,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,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000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A	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3)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

Q	전부터 00당 후보자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. 00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00당 후보자의 대학입시공약 홍보책자(00당과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)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, 이번 선거에서 00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.
A	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,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4) 현수막·배지를 사용하는 행위

Q	000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 000후보자를 위하여 '교육은 000후보자에게!'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 수 있는지요?
A	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, 후보자의 이름,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.

(5)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

Q	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, 선거에서 OO당의 후보자들을 위하여 OO당 후보자의 명칭·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A	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, 후보자의 명칭·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.

(6)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

Q	OO당을 지지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.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. 할 수 있는지요?
A	스마트폰으로 선거유세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(7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

Q	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교 그림 동아리에서 'OO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O 후보자를 지지합니다.' 또는 'OO동아리 대표(회장)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.'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?
A	'OO동아리' 또는 'OO동아리 대표(회장) OOO'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8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

Q	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.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O후보자를 위해 'OO동아리는 OOO후보자를 지지한다.'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A	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(회장)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9)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

Q	전부터 O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, O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.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?
A	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(10)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

Q	같은 반 친구가 '게임 아이템을 주겠다.' 라고 하면서 '그 대신에 선거에서 ○○○후보자에게 투표해줘.'라고 하는데,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?
A	정당,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(11) 정당·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

Q	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,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?
A	정당·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(12)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

Q	SNS를 이용하여 "○○후보자가 당선되면 □□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.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. 100명 선착순으로 꼭지주세요."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,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?
A	정당, 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,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,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(13)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

Q	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·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, 괜찮나요?
A	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.

(14)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

Q	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, 선거사무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. 받아도 되는 건가요?
A	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,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(15)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

Q	제가 사는 곳에 ○○○후보자와 □□□후보자가 있습니다.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
A	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.

(16)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

Q	저희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는데,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.
A	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.

(17)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

Q	(사전)투표소에서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·전송·공유해도 되나요?
A	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II 학생(18세)의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된 사례 Q&A

(1) 입후보 가능한 선거와 나이

Q	선거법이 개정되어 고등학생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?
A	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(2024. 4. 10.)에 18세가 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.

(2)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나이

Q	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
A	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가 아니더라도 입후보하려는 선거의 선거일에 18세가 된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및 자신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(3) 예비후보자 등록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

Q	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?
A	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·경력 기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해서는 입후보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4) 입후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

Q	선거일에 18세가 되는 학생입니다.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입후보시에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.
A	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(예비)후보자의 후원회

Q	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. 1,500만원의 기탁금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모았는데,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?
A	지역구국회의원선거(예비)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며, 각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모금하여 후원회를 지정한 (예비)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국회의원(예비)후보자후원회는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 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후보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I

학생(16~18세)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사례 Q&A

(1)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

Q	<p>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,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?</p>
A	<p>16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,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</p> <p>또한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되며, 학교 내에서의 정당활동은 학교관리자(교장)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.</p>

(2) 학생의 경선운동 ①

Q	<p>OO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 OO정당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 경선을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합산하여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경선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경선운동시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?</p>
A	<p>질문의 OO정당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 경선과 같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하는 경선의 경우 경선운동시 18세 이상의 학생은 말(言)로 하거나 직접 전화통화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며, 지지하는 경선 후보자의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지지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질문과 같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</p>

(3) 학생의 경선운동 ②

Q	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(16세). 제가 속한 □□정당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당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?
A	16세 이상의 학생도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각 정당별로 경선운동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경선운동방법에 관하여는 소속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4)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

Q	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.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 OO정당에 가입시키고 싶은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?
A	당원가입 권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, 당원가입 권유시에는 친구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.

(5)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

Q	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. 친구가 저희 정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을 앞두고 자기도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싶어 OO정당에 가입하고 싶은데 당비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 당원인 제가 정당가입 대가로 대신 당비를 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?
A	질문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 해주는 행위는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서 선거법이 금지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.

(6)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

Q	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가 속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위하여 주위 친구들 에게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.
A	주위 친구들에게 말로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문자 메시지로 후원회 계좌,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원회 기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IV

교원 · 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

(1)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·반대

Q	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·후보자를 지지(반대)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?
A	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. 특히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.

(2)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

Q	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(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)에 000후보자의 공약사항, 선거벽보,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,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3)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

Q	학생에게 수업시간에 '집에 가서 부모님께 000후보자를 찍자고 말씀드려라.' 라고 할 수 있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4)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

Q	학생에게 '이번 선거에서 00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00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.'고 말해도 되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5) (예비)후보자 업적 홍보

Q	학생들에게 (예비)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등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6)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

Q	제 친구가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'정말 좋은 사람이다.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.'라고 말해도 되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7)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

Q	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. 000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, 동아리 학생들에게 000후보자의 강연회·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·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000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8)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

Q	제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셨는데,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.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, 춤이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'000후보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해서 공연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.'라고 말해도 되는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9) 특정 정당 지지·반대 행위

Q	OO정당은 □□정당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공약을 많이 개발하였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□□정당의 정책, 공약을 비판하고 반대로 OO정책과 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?
A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10) 정당 등 지지도 조사

Q	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?
A	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(11) 투표한 정당 조사

Q	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 전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·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?
A	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(12) 당원 가입·후원금 기부 권유 등

Q	학생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,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요?
A	교원이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,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·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(13)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·토론회 개최

Q	□□학교 교장입니다. 저희 학교에서는 OO당 OOO후보자를 초청하여 OO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·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?
A	학교에서 정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합니다.

(1)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

Q	후보자가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?
A	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(2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

Q	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기호, 성명, 정당명 등이 기재된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 및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?
A	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.

(3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

Q	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?
A	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(4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

Q	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장장치로 지지·호소할 수 있나요?
A	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(5)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

Q	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, 후보자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 할 수 있나요?
A	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.

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
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(전화번호: 1390)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